



정보화사회와 윤리

- 성신여자대학교 김도형 @ IT학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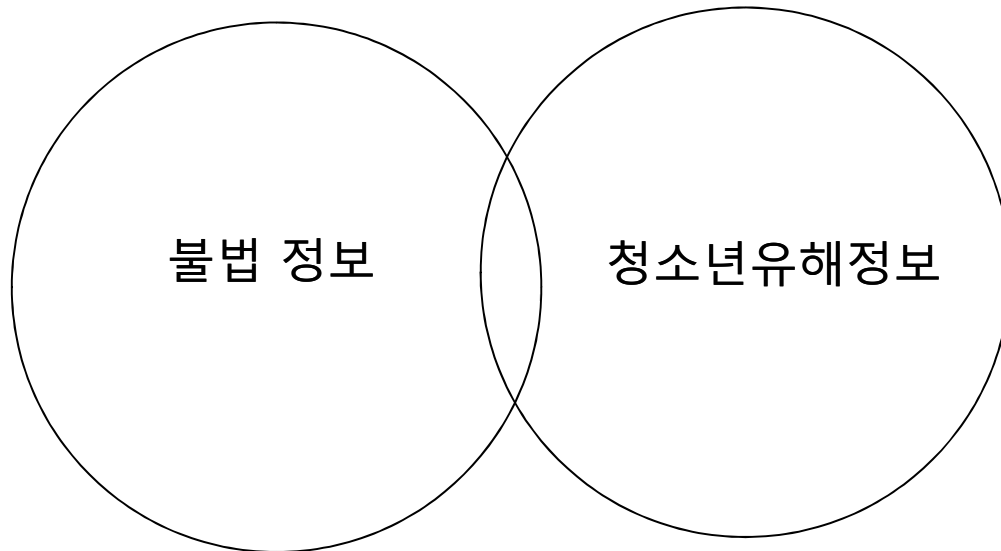


제11장 유해정보 유통

- 유해정보의 이해
-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유해정보의 이해 (1/7)

- 유해정보의 정의 (1/4)
 -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정보;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로 나눌 수 있음



유해정보의 이해 (2/7)

- 유해정보의 정의 (2/4)

- 불법정보

- 법과 국가질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현행법이 생산·저장·유통을 금지한 정보
 -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사례
 -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 내용
 - 인권침해 내용
 - 인명경시 내용
 - 법과 질서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내용
 -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저해에 관한 내용
 -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등

유해정보의 이해 (3/7)

- 유해정보의 정의 (3/4)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에 따른 불법통신의 종류

순서 \ 구분	위법 또는 유해한 정보내용의 예
제1호(음란한 전기통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2호(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3호(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4호(해킹바이러스유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6호(도박 등 사행행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7호(국가 기밀 누설)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8호(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9호(범죄관련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유해정보의 이해 (4/7)

- 유해정보의 정의 (4/4)

- 청소년유해정보

-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 좁은 의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결정·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띠는 영리·비영리 정보
 - 사례
 - 음성이란 신음소리, 괴성 등의 소리
 - 영상은 그림, 사진과 같은 정지화상 및 동영상
 - 문자는 단어나 문장

유해정보의 이해 (5/7)

- 유해정보의 분류 (1/3)
 - 유해 콘텐츠에 대한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EU 위원회)

구분 순서	보호법익	위법 또는 유해한 정보내용의 예
1	국가안전보장	폭탄제조, 위법의 약품제조, 테러
2	미성년자 보호	부정판매행위, 폭력, 포르노
3	개인 존엄성의 확보	인종차별
4	경제의 안전/신뢰성	사기, 신용카드의 도용
5	정보의 안전/신뢰성	악의적인 해킹
6	프라이버시의 보호	비합법인 개인정보의 유통 전자적피해 통신
7	명예/신용의 보호	중상모략, 불법 비교광고
8	지적 소유권	소프트웨어, 음악 등의 저작물의 무단 배포

유해정보의 이해 (6/7)

- 유해정보의 분류 (2/3)
 - 매체(media) 형태에 따른 분류 (1/2)

매체	유형	형태	주요내용
문자	음란	전자게시판 게시글, 소설, 060 서비스 Mobile 통신 (060 문자)	폭력적(살인, 강간)이거나 야한 소설(야설), 비속어를 포함한 SMS, MMS
	폭력		
	반국가	전자게시판(BBS) 게시글	김일성, 김정일 저작물, 노동신문 등
	사생활 침해	전자게시판 게시글, 이동통신사의 060 서비스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 또는 허위의 내용을 게시
음성	음란	전화방, 060, 700, ARS, 국내/국제 폰팅	불건전 만남 유도 폭력 음란·폭력적 대화
	폭력		
정지화상	음란	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applet)	포르노그래피, 잔혹사진 등
	폭력		
	반국가		계급혁명을 미화하는 내용의 사진 등
	사생활 침해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지화상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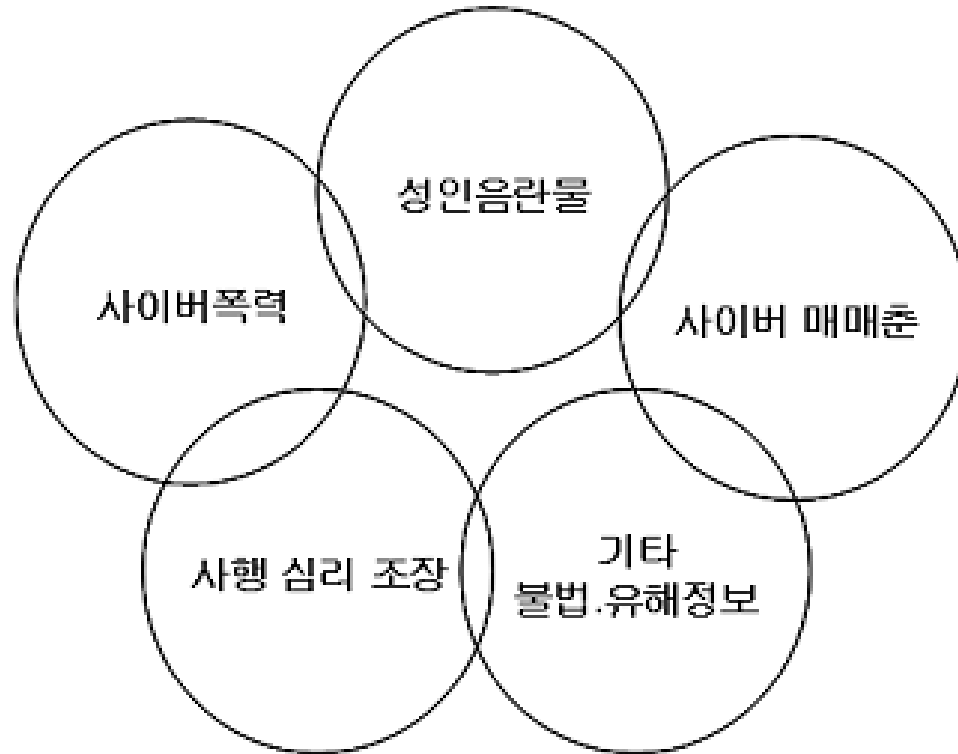
유해정보의 이해 (7/7)

- 유해정보의 분류 (3/3)
 - 매체(media) 형태에 따른 분류 (2/2)

매체	유형	형태	주요내용
동영상	음란	MPG, MOV, RM, AVI, ASF 파일 형태의 동영상	음란한 내용의 몰래 카메라, 한국인 유학생의 포르노, 야한 동영상(야동)
	폭력		실제 또는 실제로 위장된 살인, 강간 장면을 찍은 스너프(snuff) 필름
	반국가		조선중앙방송을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장
	사생활 침해		몰래 카메라, 셀프 카메라
게임	음란	CD, RPG, MUD 등	퇴폐·폭력적 내용의 게임
	폭력		
기타	음란	음란·폭력적 대화 음란 사이트의 배너	IRC(Internet Rely Chatting)을 통한 음란한 대화 및 만남 주선
	폭력	음란물 판매 광고	IRC를 통한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금융(대부업) 광고	개인정보 오용 및 해커에 의한 유출, 1% 금리 또는 당일 대출 유혹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1/10)

- 유해정보의 종류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2/10)

- 성인음란물

- 실제 여성과 남성의 성 관계가 지나치게 직접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정보를 의미
- 성매매, 변태, 아동 포르노
- 현황은 인터넷 밖 실제 공간을 통하여 CD나 디스켓의 형태로, 인터넷 상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야한 소설('야설'), 야한 사진('야사'), 야한 동영상('야동') 파일 등으로 전달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3/10)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실태조사 결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2006년 7월
 - 인터넷의 역기능 중 대표는 '성인음란물' (77.5%)
 - 인터넷 성인음란물의 제재 여부
 - "내용 또는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55.1%)
 - "성인음란물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31.3%)
 - "정보 수용 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한다" (13.6%)
 -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접한 비율
 - 초등학생의 68.3%
 - 중고교생의 84.4%

※ "성인물에 가장 비관용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많이 구입???"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4/10)

- 청소년들의 음란물 사이트 접속 통계
 - 각급 학교의 PC 실습실에서도 음란물 접촉이 얼마든지 가능한 실정

구분	음란물 발견 수	비율(%)
초등(12)	9	66.6
남녀공학중(10)	8	80
남자중(7)	5	71.4
여자중(4)	3	75
남녀공학고등(11)	9	81.8
남자고등(9)	8	88.8
여자고등(7)	4	57.1
집안의 컴퓨터(12명)	11	91.6
합 계	57	7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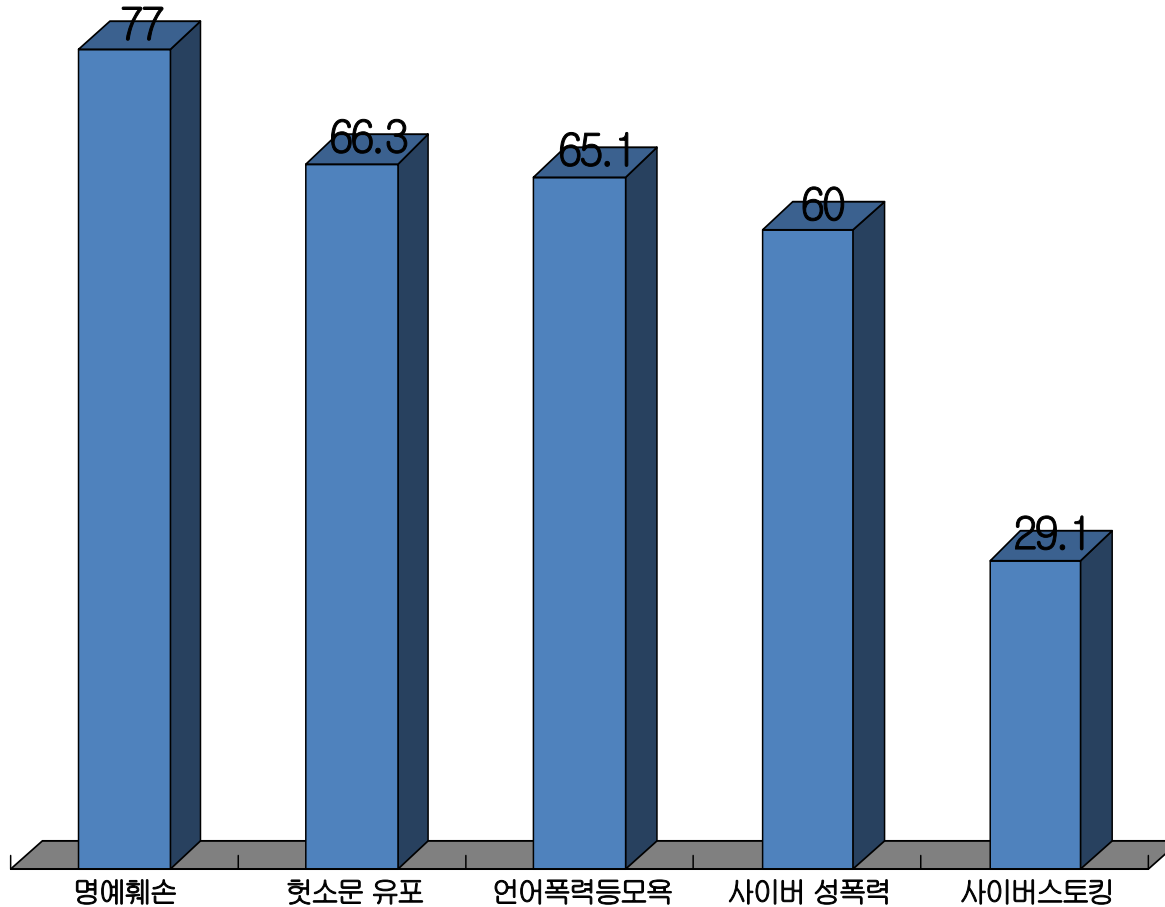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5/10)

- 사이버 폭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넓은 의미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6/10)

- 심각성 정도(설문조사 결과)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7/10)

- 사이버 매매춘

- 통신을 통해 성을 팔거나 사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아울러 사이버 공간 밖에서 실제적인 매매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
- 매매춘을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혹은 개인간에 매매춘의 의사를 담은 메시지를 띄워 매매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

- 유형

- 독립적인 매매춘: 전자게시판(BBS)이나 대화방, 웹-카페
- 기업적인 매매춘: 국외의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매매춘 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매춘 알선을 주도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8/10)

- 사행성 심리 조장 (1/2)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 (고스톱과 포커 등 도박성 게임과 경품, 복권 사이트 등)

- 유형

- 사이트 이용자에게 회비를 받고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여 적립한 사이버 머니를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불해 주는 형태
 - 거액 당첨금, 경품을 건 베팅 방식 불법 피라미드, 아이템 거래, 불법 경품/복권 등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9/10)

- 사행성 심리 조장 (2/2)

- 현황 및 실태

- 주부나 회사원, 중·고생들까지 심각한 중독 증세
 - 인터넷을 통한 도박은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포커, 블랙잭, 룰렛, 슬롯머신 등의 도박을 하면서 배팅하는 돈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취함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사이트에서는 달러로 신용카드 결제 처리되어 외화의 해외유출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폭행, 협박, 살인,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
 - 최근 들어 몇몇 국가에서 인터넷 도박의 피해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여 인터넷 도박의 금지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시도함
 - ↔ 인터넷 도박이 합법화된 지역: 버뮤다, 지브롤터 등

유해정보 피해 및 실태 (10/10)

- 기타 유해정보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의한 피해
 - 네이버의 '지식인', 야후, 엠파스 등의 '지식검색' 서비스
 - 자살방조 사이트
 - 폭탄제조, 무기 판매 사이트
 - 악성 팝업 창
 - 원조교제, 동성애 사이트
 - 장기매매, 스와핑, 성인용품 판매, 사생활 침해 몰카 사이트
 - 살인청부, 독극물 판매 사이트
 - 잔혹·엽기 사이트
 - 사기 사이트
 - 마약,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
 - 관세법 상표 위반
 -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기밀누설 사이트 등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21)

- 교육방안
 - 바른 성교육을 한다.
 - 컴퓨터를 가족 공용화 한다.
 - 밤늦은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킨다.
 - 부모가 컴퓨터를 배운다.
 - 컴퓨터 외에 다른 취미 활동을 권한다.
 - 신용카드를 잘 관리한다.
 - 성인음란물 대응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유해 정보가 발견되면 신고한다.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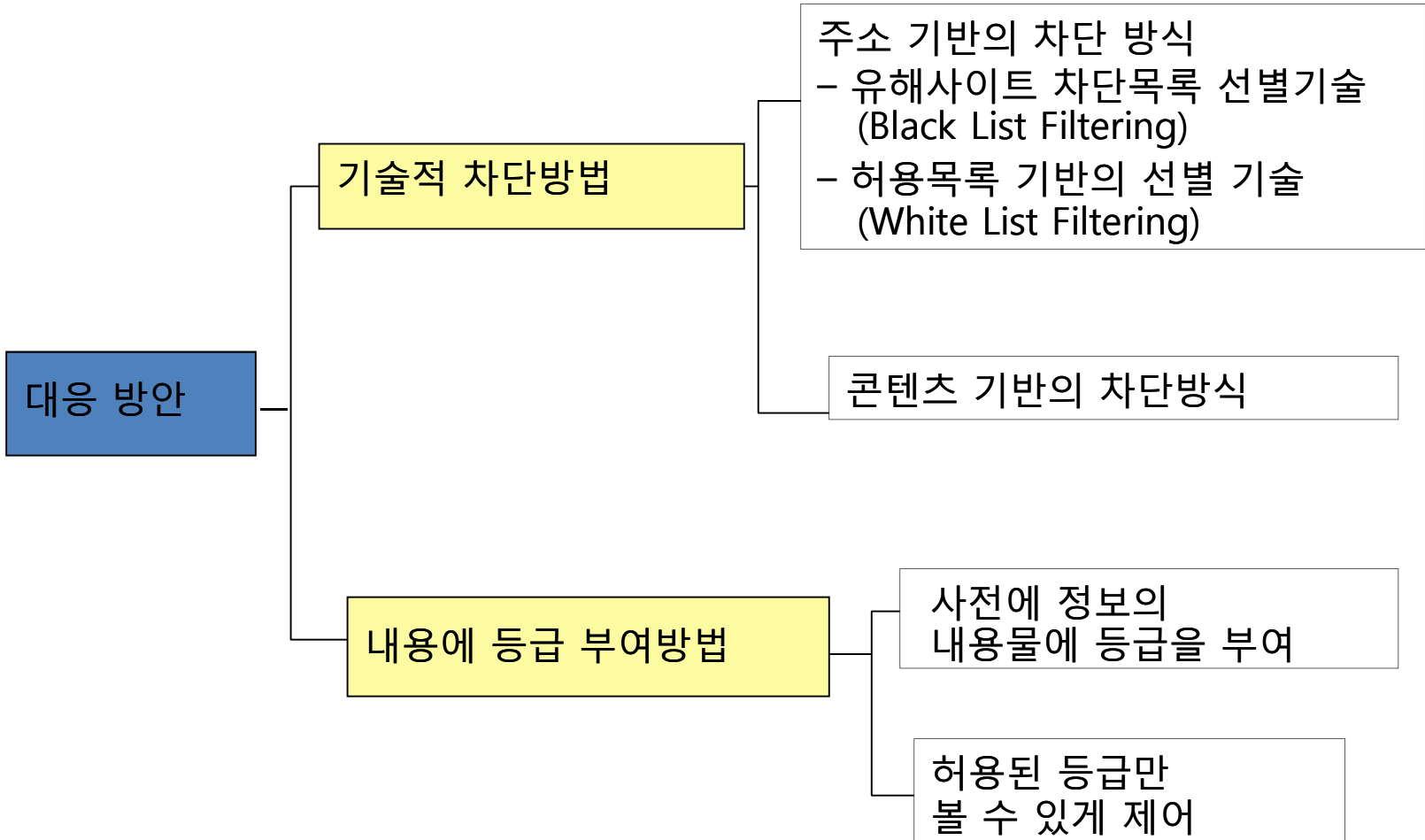
-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
 - 개인정보 관리는 중성적 ID나 대화명을 이용한다.
 -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 오프라인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한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는다.
 - 적대적인 상황이 예측될 경우 그 자리를 떠난다.
 -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대방을 목격하거나 만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
 -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린다.
 - 대화실 등에서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3/21)

- 기타 유해정보에 대한 예방책
 - 가정에서
 - 자녀에게서 자살 신호가 나오는지 관찰한다.
 - 인터넷 방화벽을 설치하여 자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 학교에서
 - 학생에게서 자살 신호가 나오는지 관찰한다.
 - 인터넷 방화벽에서 자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 자살 사이트 발견시 학교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지도한다.
 - 사회에서
 - 학부모단체 등을 조직하여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자살 사이트를 찾아내어 폐쇄나 방화벽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자살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든다.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4/21)

- 구분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5/21)

- 기술적 차단 방안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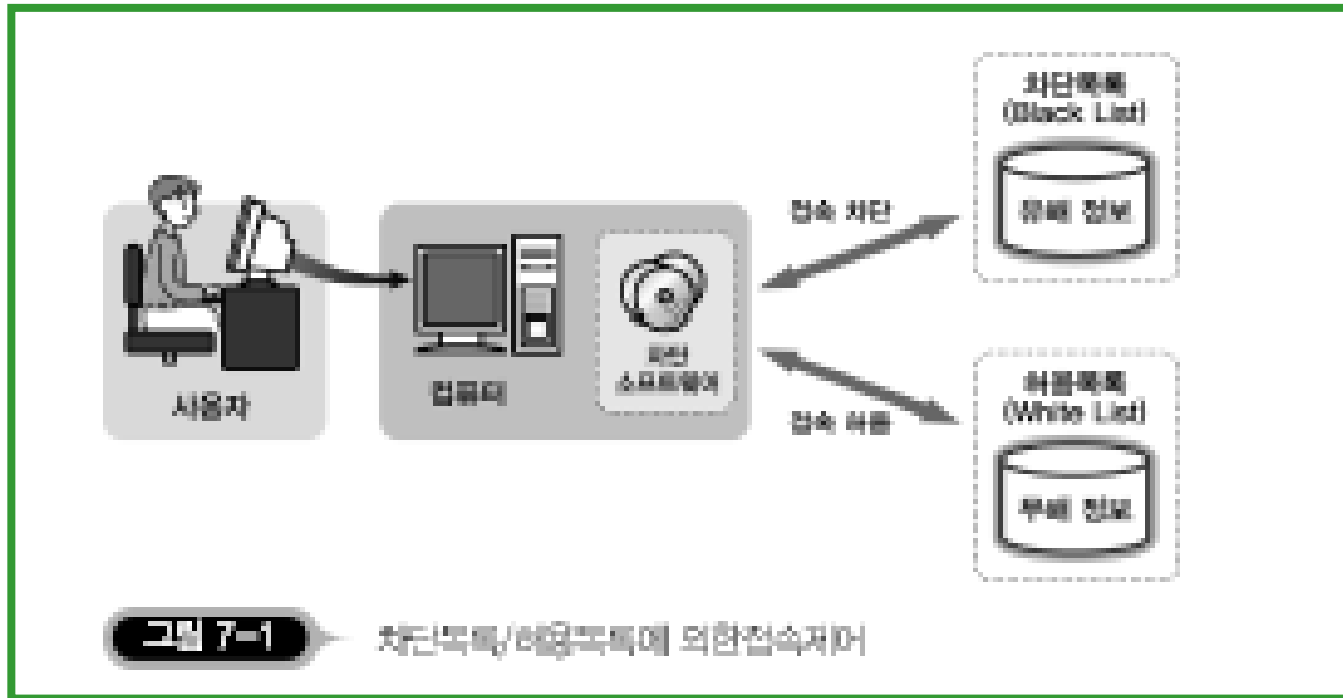
- 미국 등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자료등급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각종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기술적 대책
-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 웹-로봇 에이전트
 - 자료를 수집하여 주소기반 목록 리스트를 구축
 - 분류 에이전트
 - 접속을 차단하는 사이트와 접근을 허용하는 사이트로 분류
 - 관리 에이전트
 - 분류된 자료를 유지하고, 생성/소멸되는 사이트에 대해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이에 따른 자료를 관리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6/21)

- 기술적 차단 방안 (2/5)

- 주소 기반의 차단

- 유해정보를 갖고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확보하여 이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과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이트의 주소를 확보하여 그 주소로만 접속을 허용하는 방법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7/21)

- 기술적 차단 방안 (3/5)

- 1) 차단목록 기반의 선별기술(Black List Filtering)

- 음란, 폭력 등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 사이트를 차단
 - 판단방법은 포르노 등 유해 사이트 주소목록인 차단목록을 갖고 있다
가 사용자가 인터넷의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이 사이트의 주소가 차단 목록에 있을 경우 접속을 허용하지 않게 함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에는 접근이 가능
 - 차단목록(Black List)의 주기적인 갱신에 어려움
 - 불건전 사이트에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보완키 위해 수신 정보의 키워드 및 구문 검색을 통해 불건전정보 포함 사이트를 차단함
 - 포괄적 기준 설정으로 인한 무차별 차단의 가능성
 - 차단도구 개발자나 차단목록 제공자에 의한 실질적인 검열권 행사 우려가 있음
 - 대부분의 차단 소프트웨어가 이 방법에 근간을 둬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8/21)

- 기술적 차단 방안 (4/5)

- 2) 허용목록 기반의 선별기술(White List Filt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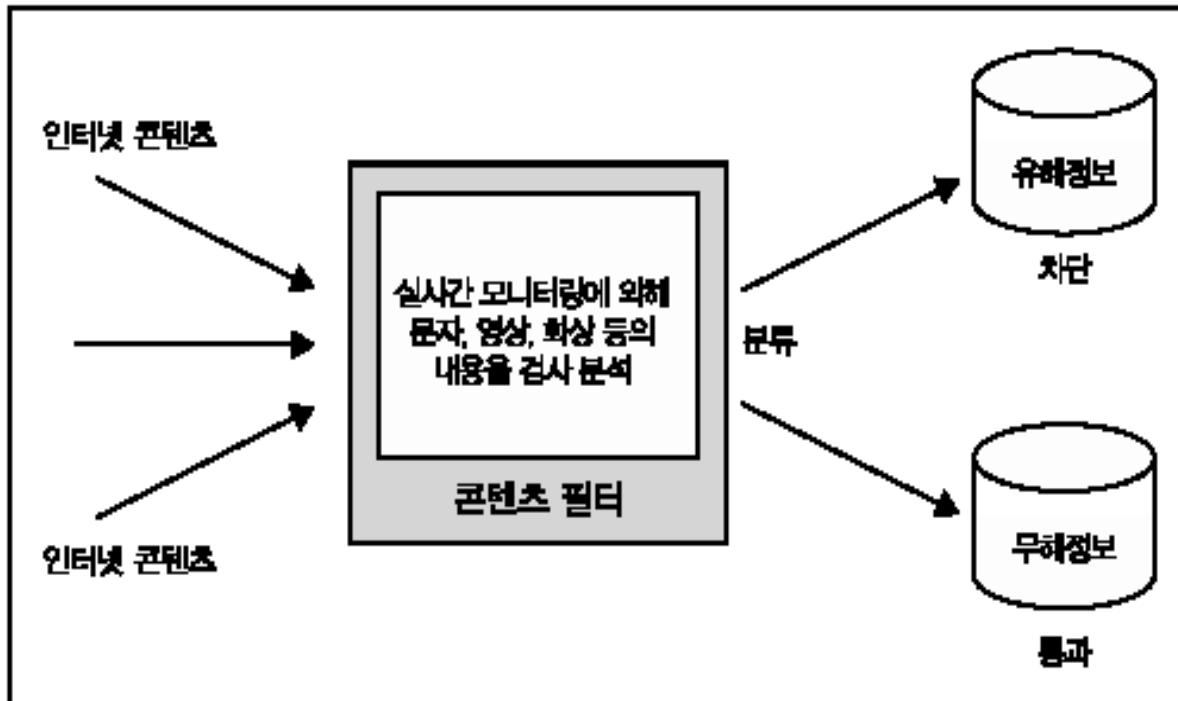
- 내용이 검증되어 리스트에 등록된 사이트만 접근을 허용, 이외의 사이트는 모두 차단
 - 불건전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음
 -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극히 제한적
 - 일반적으로, 부모는 지정된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사이트로의 접근이 가능
 - 학교나 학원 등의 특수 환경에서 사용 적합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9/21)

- 기술적 차단 방안 (5/5)

- 콘텐츠 기반의 차단 (예: 엑스키퍼)

-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 필터링의 핵심기술로, 멀티미디어 정보의 빠르고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MPEG-7 국제표준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인식 기반 필터링 엔진 기술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0/21)

- 등급부여에 의한 차단 방안 (1/7)
 -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을 객관적 평가를 거친 등급기준으로 분류하여 이용 가능한 등급정보를 표시
 - 정보이용자(PC 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가 해당 정보 내용을 필터링 또는 블로킹(선별 또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허용된 등급의 해당 정보내용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안
 - 기존의 영화등급이나 도서관의 분류된 자료처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 내용물에 등급 부여
 - 정보의 음란성, 폭력성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보의 내용에 등급을 부여함 / 접속시에 허용된 등급만 볼 수 있게 제어

※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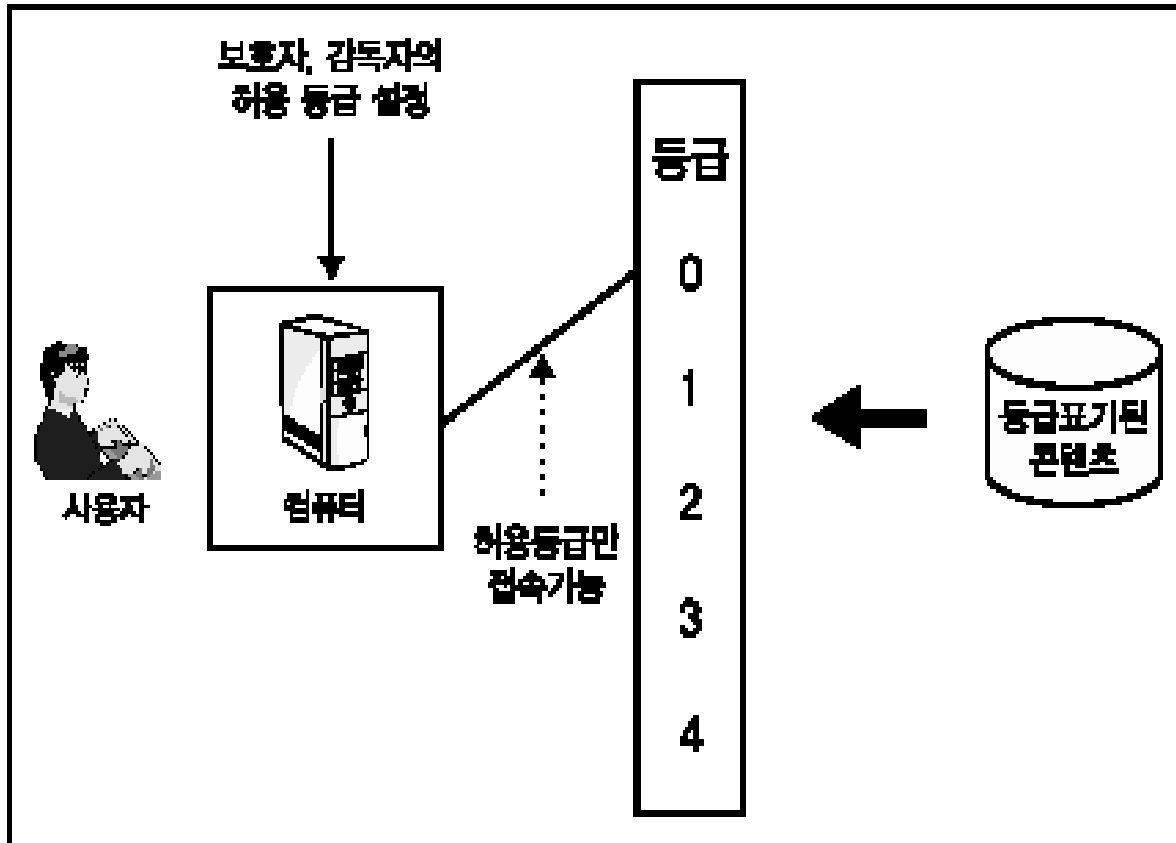
- 등급부여에 의한 차단 방안 (2/7)
 - 등급부여의 필요성
 - 정보제공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이버 공간의 출판자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됨
 - 등급을 표시한 사이트가 많아지게 되면 정보이용자들은 인터넷상의 정보 내용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
 - 이러한 과정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인터넷 이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익을 가져다 줌
 - 정보제공자가 정보내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해 두면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2/21)

- 등급부여에 의한 차단 방안 (3/7)
 - 등급의 부여 방법
 - 자율등급표시 서비스제(자율심의)
 - 정보제공자가 객관적으로 공시된 자기의 등급(Publisher's Label) 기준을 참조 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자발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
 - 5개 범주 5단계(0~4등급)
 - 검열 없는 자율적 규제
 - 정보내용 자체에 등급부여
 - 해외 음란·폭력 정보 등에 대한 제3자 등급 서비스로서 정보내용 자체에 등급을 부여하여 목록을 구축하면 음란·폭력 정보 등의 선별/차단을 원하는 이용자가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만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3/21)

- 등급부여에 의한 차단 방안 (4/7)
 - 내용 등급기반의 정보선별에 의한 전달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4/21)

- 등급부여에 의한 차단 방안 (5/7)
 - 등급의 기준에 의한 연령별 권장사항
 - 등급기준은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 등급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 ENC(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마련되었으며, YMCA의 설문조사 결과와 자문회의의 의견이 반영

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전체가 (초등학생가)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12세 이상 (중학생가)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5세 이상 (고등학생가)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8세 이상 (성인가)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연령별 권장사항(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5/21)

- 등급부여에 의한 차단 방안 (6/7)
 - 등급기준

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0등급	노출 없음	성행위 없음	폭력 없음	비속어 없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6/21)

- 등급부여에 의한 차단 방안 (7/7)
 -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의 소스(source)에 메타태그 (meta tag)를 이용하여 '인터넷내용선별기술표준(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PICS)에 의해 정해진 표시방법으로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적절한 등급수준을 표시
 - PICS는 W3C(World-Wide Web Consortium)에 의해 인터넷 내용분류를 위한 국제적 기술표준으로 개발되어 국제적 호환성이 있음
 - PICS를 이용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정보이용자는 RAT(Router Audit Tool) 파일을 설치하여 예컨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메뉴인 '도구-인터넷옵션-내용'에서 자율등급 표시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
 - 메타태그의 예
 -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r (n 1 s 1 v 2 l 3 i 0 h 1))">`
 - ※ n = nudity, s = sex, v = violence, l = language: 0~4
i = incitement, h = health: 0(부재) or 1(존재)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7/21)

-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1/2)

- 온라인상에서 야한 동영상 파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시간,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응,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 개인용 제품 - 수호천사를 비롯해 안티-X, 녹스2, 인터넷지킴이 등
 - 서버용 제품 - 수호천사×NET, 넷아거스, 스푼, 보더매니저 등
- 기본적인 동작 방식(수호천사의 경우)
 - 차단 엔진: 사용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URL을 추출하면 실제 해당 사이트에 접근을 시도하기 전에 블로킹 콜(Blocking Call)을 통해 동작을 잠시 정지시킨 후 추출된 URL을 유해 사이트 판단 모듈에 전달
 - 판단 모듈: 차단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URL을 플러스기술 유해 사이트 판단 서버에 전달
 - 만일 유해 사이트이면 차단 엔진에 유해 사이트임을 알리고 이에 따라 차단 엔진은 캡슐화된 커넥트(Connect)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 자체를 끊어버림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8/21)

-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2/2)
 - 종류와 이용 사이트
 - 학부모정보감시단(<http://www.cyberparents.or.kr>; 무료)
 - 수호천사(<http://www.plustech.co.kr>; 유료)
 - 웹클린21(<http://www.webclean21.org>; 무료)
 - 키즈캡(<http://kidscop.co.kr>; 무료)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19/21)

- 사이버 범죄 피해신고 (1/3)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http://www.singo.or.kr>)
 - 건전한 통신문화를 위해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 이용자(네티즌)들이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를 신고
 -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불법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결정할 경우 인터넷서비스하고 제공자(ISP), PC통신사 등을 통하여 시정되도록 조치
 - 아울러 신고물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검찰청·경찰청·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기구에 전달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20/21)

- 사이버 범죄 피해신고 (2/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icec.or.kr>)
 - 대응을 위하여 해외 관련기구 및 단체와 국제협력체제 구축하여 운영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용 사이트정보통신망의 각종 불건전정보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또한, 특히 인터넷의 해외 불법·청소년유해정보 대응을 위하여 해외 관련기구 및 단체와 국제협력체제 구축하여 운영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용 사이트
 - 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
 -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http://www.singo.or.kr>)
 -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http://www.cyberhumanrights.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유해정보 피해의 대응방안 (21/21)

- 사이버 범죄 피해신고 (3/3)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http://www.krcert.or.kr>)
 - 학부모정보감시단(청소년유해정보 예방 및 교육)
(<http://www.cyberparents.or.kr>)
 - 국가청소년위원회(<http://www.youth.go.kr>)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http://icic.sppo.go.kr>)
 -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http://dci.sp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c.go.kr>)
 - 한국소비자원(인터넷쇼핑몰 사기 등) (<http://www.cpb.or.kr>)
 - 통신위원회(통신서비스 이용 중 피해, 통신사업자의 부당행위 등)
(<http://www.kcc.go.kr>)
 -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cop.or.kr>)